

---

## VI. 결론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금융산업의 발달과 함께 금융권역 간의 장벽이 모호해지고 국제적인 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져 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형 금융그룹이 미칠 수 있는 시스템적 영향력으로 인하여 이들의 감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의 그룹감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금융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비은행 금융그룹에도 그룹감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이러한 국·내외적 논의 속에서 우리나라 복합 금융감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감독을 거시건전성 측면의 시스템리스크 감독과 미시건전성 측면의 보완적 감독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은 비교적 단순한 사업모형을 영위하고 있으며 금융업 법과 공정거래법 등 사전적 행위규제를 통해 계열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거래를 통제함에 따라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복합금융그룹 감독은 미시건전성 측면의 보완적 감독으로 축약될 수 있다.

보완적인 그룹감독 중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가장 격차가 큰 부분이 자본적정성 규제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EU복합금융그룹 감독지침에서 제시한 가감법에 기반한 우리나라 계열금융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룹단위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는 계열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의 경우 각각 독립적인 주주와 경영진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측면에서 그룹단위에서의 통제는 계열사 소수 주주들 사이에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그룹의 법적 구조, 지배 및 조직 구조의 상세 사항을 정기적으로 감독기관

에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활용할 수 있다.

보고는 또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감독원칙은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보다 넓게 금융규제 전반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비례성의 원칙으로 이는 금융감독에 있어 금융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 규모, 복잡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은 금융그룹이 영위하는 사업모형에 따른 리스크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는 감독부담 최소화 원칙으로 이는 기존 규제가 있는 경우 새로운 규제와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시장 참여자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중복되는 새로운 규제는 규제의 편익은 작은 반면 규제를 준수하는 시장참여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우리는 이제 금융그룹 그룹감독 논의에 대한 첫 발을 떤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고가 이러한 논의를 보다 심화시키고 우리나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